

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무징수팀장 박문수)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<일부개정 2007.10.4대통령령 제20310호>
 - <공중위생업>이 <공중위생관리법><1999.2.8 법률5839호>으로 전면개정 되면서 수수료 징수 규정 폐지에 의한 관련 조례 삭제
 - <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>의 규정에 의한 치기공사인정 신청외 3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제증명 수수료개정
 - 공장등록증명등 11종을 대상으로 공장등록증명서외 10종은 인상 조정하고, 법인의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외1종에 대하여는 인하 개정함.
 -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제증명수수료규정으로 영업신고사항 70종의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
 -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외 5종에 대하여는 조례 미제정으로 인하여 신규 수수료 징수 조례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-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7년 12월 14일 입법예고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 하였음.
-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외 11종을 조정함.
-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.
- 공중위생법이 1999년 2월 8일 폐지되고, 2000년 3월 16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폐지되고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이미용업소영업 허가증 및 신고증 교부등 70종의 수수료 징수규정이 삭제·변경되어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임.
-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치과 기공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안경 업소 개설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임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기 바람.
-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제개정, 폐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수수료요율표 신구조문 대비표중 치기공 소 인정신청, 안경업소개설등록의 수수료인상 및 신설에 따른 인상 폭의 타당성 혹은 근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없 음”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